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검 토 보 고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00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4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7
2. 조문별 검토	8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8
나. 박물관 법인의 설립(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9
다. 임원 및 이사회(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2
라. 재원 및 사업계획서 등(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5
마.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안 제18조)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1.
3. 회부연월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

그런데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러한 산업 발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박물관은 아직 없는 실정임.

아울러 이공계 기피 현장에 따른 인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교육·홍보 시설로서 박물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미래첨단산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박물관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라.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7조 및 제9조).

마.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함(안 제11조).

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12조).

사.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을 둘 수 있음(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산업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미래첨단산업의 특성상 산업 자료와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한 기록과 보존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 유산의 단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과 청년층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감소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대상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고,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과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산업기술 발전 과정과 성과를 기록·보존하고 미래세대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미래첨단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산업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떠한 산업과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특정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과의 관계 및 산업 간 형평성 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축적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미래첨단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체험·교육 방식과 자료 보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변화에 따라 전시 콘텐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미래첨단산업과 관련된 전시·체험·교육·홍보 기능은 기존 과학관, 산업 관련 전시시설, 연구기관 등에서도 일부 수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¹⁾ 기존 시설과의 기능 분담 및 연계 방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국립항공박물관, 국립농업박물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와 자원 조달 방안 등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이후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으므로²⁾ 박물관의 운영 방식, 자원 조달 방안 및 중장기 운영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1)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기술관을 통하여 산업혁명 및 미래기술과 관련된 전시를 운영하고 있음.

2) 국립농업박물관 : 기초연구('12~'13)→예타통과('15)→기본계획('16)→법제정('19)→설립('20)

국립해양박물관 : 예타통과('06)→계획수립('07)→설립 및 개관('12)→법제정('15)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으로, 별도의 장 구분 없이 본칙 26개 조문과 부칙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립해양박물관법」(2015. 3. 제정), 「국립항공박물관법」(2019. 8. 제정), 「국립농업박물관법」(2021. 6. 제정) 등 유사입법례와 동일하게 법인의 설립,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1] 제정안 목차

구 분	조 문	
본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이사회) 제12조(재원)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4조(차입금) 제15조(후원회) 제16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9조(감독)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제21조(비밀엄수의무)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준용)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하도록 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2]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래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교육·전시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은 “미래첨단산업”을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대상 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전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축적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미래첨단산업 분야의 자료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유산”으로 선정·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미래첨단산업”의 범위와 대상이 유동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박물관 명칭 및 운영 대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나. 박물관 법인의 설립(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정안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정관, 사업 및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3조(법인격)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 정 안

제4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 박물관자료(미래첨단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제 정 안
10. 그 밖에 미래첨단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 박물관의 운영 방식은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³⁾ 외에도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⁴⁾에서는 문화·전시·연구형 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항공박물관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 등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제정안과 같이 박물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민간의 창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미래첨단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산업계·연구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인 형태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정부조직 관리지침」(p. 33)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문화·전시·연구형 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신설 법인기관 주관부처는 설립 2년 전 행정안전부에 법인설립 추진계획 제출

다만, 미래첨단산업과 관련된 전시·체험·교육·홍보 기능은 기존 과학관, 산업 관련 전시시설 및 연구기관 등에서도 일부 수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⁵⁾ 기존 시설과의 기능 분담 및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다. 임원 및 이사회(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정안은 박물관의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을 두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와 직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4]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7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5)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기술관을 통하여 산업혁명 및 미래기술과 관련된 전시를 운영하고 있음.

제 정 안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정안은 1명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 직무대행 순위를 별도로 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정안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⁶⁾과 같이 관장과 이사·감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립항공박물관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⁷⁾은 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원 간 임기 체계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의 기능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제정안 역시 향후 박물관의 사업 범위, 조직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임원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6)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7) 「국립항공박물관법」

제6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6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라. 재원 및 사업계획서 등(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정안은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5]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2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 정 안

- 제15조(후원회)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의 수집·보존·연구·전시 기능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자체적인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미래첨단산업 관련 전시·체험 시설은 기술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콘텐츠 교체 및 시설 개선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건립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운영비와 콘텐츠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안 제18조)

제정안은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6]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미래첨단산업 분야는 산업·연구·교육 분야 간 협업의 필요성이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박물관 운영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규모와 역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